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4쪽 중 제1쪽)

사 업 연 도	· · · · · ·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구 분	① 요 건		② 검 토 내 용		③ 적 합 여 부	④ 적 정 여 부																								
중 요 요 건	⑩ 사 업 요 건	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기준</th><th>비율 코드</th><th>사 업 수 입 금 액</th></tr><tr><td>업태별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(01)</td><td>()업</td><td>(04)</td><td>(07)</td></tr><tr><td>(02)</td><td>()업</td><td>(05)</td><td>(08)</td></tr><tr><td>(03)</td><td>그 밖의 사업</td><td>(06)</td><td>(09)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계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	구분	기준	비율 코드	사 업 수 입 금 액	업태별				(01)	()업	(04)	(07)	(02)	()업	(05)	(08)	(03)	그 밖의 사업	(06)	(09)	계				(17) 적 합 (Y) 부적합 (N)	(26)
			구분	기준	비율 코드	사 업 수 입 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
			업태별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(01)	()업	(04)	(07)																								
(02)	()업	(05)	(08)																											
(03)	그 밖의 사업	(06)	(09)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⑪ 규 모 요 건	○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"평균 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 출 액 - 당 회사(10) ()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() 억원) 이하 나. 자산총액(12) () 억원)		(18) 적 합 (Y) 부적합 (N)	적 (Y)																									
		⑫ 독 립 성 요 건	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⑩의① 기준) 이내일 것		(19) 적 합 (Y) 부적합 (N)	부 (N)																							
⑬ 유 예 기 간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			○ 사유발생 연도(13) () 년)		(20) 적 합 (Y) 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							
소 기 업	⑭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	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⑫)을 충족하는지 여부		(21) (Y), (N)	(27) 적 (Y) 부 (N)																								
	⑮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본다) 이내일 것		○ 매 출 액 - 당 회사(14) ()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) 억원) 이하		(22) (Y), (N)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			③ 적 합 여 부	④ 적 정 여 부
중 견 기 업	㉓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㉓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			(23) (Y), (N)	(28) 적 (Y) 부 (N)
	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				(24) (Y), (N)	
	㉕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				(25) (Y), (N)	
	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]: 1천5백억원 미만 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
	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): 5천억원 미만	(억원)	(억원)	(억원)	(억원)		
	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억원 미만						

작 성 방 법

1.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,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.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.
 - 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),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) 등
2. ② 검토내용란의 ㉮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.
3. ② 검토내용란의 ㉮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4.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"적합" 또는 "부적합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(25)란은 ① 요건란 ㉮의 ① ~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"(Y)"에 "○"표시하며, ㉮의 ① ~ 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5. ④ 적정여부의 (26)란은 ① 요건란의 ㉮·㉮·㉮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, ① 요건란의 ㉮ 요건(유예기간)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6. ④ 적정여부의 (27)란은 ① 요건란 ㉮ 및 ㉮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7. ④ 적정여부의 (28)란은 중소기업이 아닌[(26)에 "부(N)"로 기재]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㉮, ㉮, ㉮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봅니다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1,500억원 이하	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	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6. 가구 제조업	C32		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1,000억원 이하	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제외)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8. 광업	B		32. 운수 및 창고업	H	
9. 식료품 제조업	C10		33. 정보통신업	J	
10. 담배 제조업	C12		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(임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17. 전자제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41. 금융 및 보험업	K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42. 부동산업	L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43. 임대업	N76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44. 교육 서비스업	P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		
22. 수도업	E36				
23. 건설업	F				
24. 도매 및 소매업	G				

작 성 방 법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봅니다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	19. 광업	B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20. 담배 제조업	C12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5. 코르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29. 건설업	F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30. 운수 및 창고업	H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31. 금융 및 보험업	K	
15. 가구 제조업	C32		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	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제외)	
			35. 부동산업	L	
			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			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			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			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			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			41. 교육 서비스업	P	
			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			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*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